

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(안)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146호)

◦ '98. 4. 13.

◦ 총무재무위원회

위 원 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8. 4. 1 서초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'98. 4. 9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'98. 4. 13

라. 위원회개최 회수 및 일수 : 제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
(1회 1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국장 신 종식)

가. 제안이유

◦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쓰레기를 감량화하여 폐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초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시설자금을 응자지원하여 왔으나 '97.12월말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대상 120,766세대중 보급세대가 102,766세대로써 도시가스 보급율이 85%에 이르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◦ 조례 폐지

◦ 기 응자된 기금의 상환 등에 대하여는 기금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함. (안 부칙 제2조)

-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상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(안 부칙 제33)
- 시행규칙 폐지 (안 부칙 제4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:

가. 검토내용 : 생략(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참조)

나. 검토결과

- 본 폐지 조례(안)은 '98. 3. 16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내용이나
- 부결된 주요원인이 내곡동등 일부지역의 도시가스보급율이 아직까지 70%가 되지못한 지역(내곡동 1.4%, 방배1동 67%)에 대한 도시가스보급 대책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부결되었음.
- 도시가스 공급관을 도로에 매설하고 도로에 매설된 공급관에서 인입관 공사를 하여 각가정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나,
- 내곡동은 농촌마을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사에서 도로에 가스공급관을 매설하지 않았고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수년후에도 공급관이 매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조치가 없는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.
- 그외 방배동지역은 도로에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어 도시가스 수요자가 원활시에는 별문제가 없으며,
- '97.12월말 현재 서초구 도시가스보급율이 85%로 동조례 부칙2항에 의하면 이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%달성을 까지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고,
- '93년에 88가구 '94년에 183가구, '95년 104가구로 '95년까지는 많은 가구가 본 기금을 사용하였으나 '96년 8가구, '97년에는 3가구만 기금을 사용하여 본 기금을 사용하고자하는 희망가구가 거의 없으며,

※ 타구에서도 기금목적 달성으로 본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임.

- 기 폐지 3개구 : 송파, 강동, 마포구
- 폐지추진 3개구 : 도봉, 중랑, 영등포구

- 폐지조례(안)이 확정되면 기금잔액과 '98년 이후 회수되는 기금잔액은 구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입금처리되는 것임.
-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가구가 거의 없는 16억의 기금을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- 현행 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 보금목표 70%를 상회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이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서초의 일부에는 여전히 맞지 않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 폐지후라도 이러한 일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?
→ 만약 본 조례가 폐지되면 지속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기금을 조성, 지원토록 제도적 후속조치를 시행하겠음.

5. 토론자 및 토론판지 없 음

6. 수정안의 요지 없 음

7. 심사결과 원안가결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

10.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 음